

3 축산업등록제 세부시행지침

농림부

1. 등록신청

가. 등록대상 축산업 범위(축산법 제20조제1항 및 시행령제11조의3)

□ 부화업·종축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○ “부화업”이라 함은 인공부화시설로 농림부령이 정하는 가축의 알을 부화하여 판매(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는 업을 말한다(축산법 제2조제4호).

- 부화업대상의 알: 닭 및 오리의 알(시행규칙 제4조)

○ “종축업”이라 함은 종축을 사육하고, 그 종축으로부터 농림부령이 정하는 번식용 가축 또는 씨알을 생산하여 판매(다른 사람에게 위탁하여 사육하게 하는 것을 포함한다)하는 업을 말한다(축산법 제2조제4호).

- 종축: 품종의 순수한 특징을 지닌 번식용 가축으로서 종축등록기관에 등록을 하거나 종축검정기관의 검정을 받은 결과 번식용으로 적합한 특징을 갖춘 것으로 판정된 가축을 말함

• 번식용 가축: 돼지·닭

- 씨알은 다음의 요건을 갖춘 닭의 알을 말함

• 가축의 검정결과 종계로 확인된 닭에서 생산된 알로서 그 종계 고유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알

• 가축전염병방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가축전염병에 대한 검진결과가 음성인 닭에서 생산된 알

□ 계란집하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

○ 계란집하업: 닭의 알을 수집하여 선별·포장한 후 판매하는 업

□ 다음의 가축사육농가

① 소사육농가: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㎡를 초과하는 농가



② 양돈농가: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50㎡를 초과하는 농가

③ 양계농가: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이 300㎡를 초과하는 농가

※ 하나의 농장으로 분류되는 부지내의 가축사육시설의 면적의 합을 기준으로 함

□ 등록대상 미만 농가는 희망시 등록(신고) 허용

나. 축산업 등록의 결격사유(축산법 제20조의2)

①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업의 등록을 한 후 적발되어 징역의 실행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(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)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②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하거나 거짓 그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업의 등록을 한 후 적발되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

③ 축산업의 등록이 취소된 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

④ 대표자가 제1호 내지 제3호의 1에 해당하는 법인

다. 등록기간(축산법 부칙 제2조 및 시행규칙 부칙 제2항)

□ 기존 종축업·부화업 신고자는 등록된 것으로 간주

○ 조속한 시일내에 등록대장 정리, 등록증 발급, 등록자 관리카드 작성 등 후속조치 완료

○ 점검시 시설·장비기준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

□ 계란집하업: '04.6.26일까지 등록

□ 가축사육업: '05.12.26일까지 등록

라. 축산업 등록 및 보고

□ 축산업등록증 발급

○ 등록신청내용 검토결과 적합한 경우 신청인에게 등록증 발급

〈주의〉 등록증 발급시 유의사항

◇ 축산업을 등록하는 것이 무허가 축사 등을 양성화하는 것이 아님을 농가에게 설명

◇축산업등록자 준수사항과 휴·폐업, 영업재개, 등록사항 변경 및 승계시 30일내 신고의무 등도 고지

- 등록사항을 축산업등록대장(시행규칙 별지 제18호서식 내지 제18호의4서식)에 기재하고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(시행규칙 별지 제17호서식)를 작성·보관
- ※ 전산시스템에서 축산업신청서를 승인할 경우 자동정리되며 필요시 등록대장과 관리카드를 출력하여 보관
- 시장·군수는 매년 축산업등록현황을 그 다음 연도 2월말까지 시·도지사를 거쳐 농림부장관에게 보고
- ※ 전산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별도로 보고할 필요가 없음

2. 축산업등록자의 준수사항(시행규칙 제25조의2)

가. 부화업

- 부화업의 등록을 한 자는 닭의 알을 부화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알만 부화하여야 함
 - 종계의 알
 - 양계업의 등록을 한 자의 가축사육시설에서 육용 씨수탉과 산란용 암탉간의 교배에 의하여 생산된 알(부화용 알)

나. 종돈업

- ① 보유하고 있는 종돈에 대하여 개체별로 식별할 수 있도록 표시를 해야 함(이각, 귀표부착 등)
- ② 종돈을 판매하는 때에는 종돈혈통증명서를, 종돈이 아닌 번식용 씨돼지를 판매하는 때에는 번식용씨돼지혈통확인서를 교부해야 함
 - 순종돈: 혈통증명서
 - 교잡돈·합성돈 등 번식용씨돼지: 혈통확인서
 - 발급기관: 한국종축개량협회
 - 적용시기: '04.7.1부터(축산업등록제 시행 6개월 경과후)



다. 가축사육업

- 가축질병의 예방 등을 위하여 농림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가축사육시설의 단위면적당 사육적정 가축의 숫자 이상으로 밀집하여 가축을 사육하지 않아야 함
- 이 규정은 '07년 1월 1일부터 적용(시행규칙 부칙 제1항)하므로 농가에게 충분히 사전홍보 실시(기준은 곧 고시에정)

3. 벌칙 등 부과



- 행정처분등대장(기타서식)에 기재
-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(뒷쪽) 기재

가. 벌칙 (축산법 제44조)

□ 부과대상

- 축산업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축산업을 영위한 자
- 거짓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

□ 벌칙부과기준: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

□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해진 경우 그 사실을 행정처분대장과 축산업등록자관리카드(뒷쪽)에 기재

※ 행정처분등대장 비치·관리(기타서식)

- 등록취소, 영업정지 또는 시정명령을 한 때에는 행정처분등대장에 그 내용을 기록·비치하고, 그 이행상태를 확인

나. 등록취소 및 영업정지 등(축산법 제20조의4 및 시행령 제11조의5)

□ 축산업의 등록을 취소하는 경우

- 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축산업의 등록을 한 경우
- ② 마지막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날부터 최근 1년 내에 3회 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
- ③ 등록한 날부터 정당한 사유없이 2년 이내에 영업을 개시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하

- 지 아니하고 2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한 경우
- 축산업의 영업정지 처분을 하는 경우
 - 다른 사람에게 그 등록명의를 사용하게 한 경우

<영업정지처분 기준(시행령 별표 2)>

구분	위반 횟수			비고
	1회	2회	3회	
- 부회업·계란집하업	영업의 전부 정지 1월	영업의 전부 정지 3월	영업의 전부 정지 6월	• 계란 집하(입란)파 계란(병아리) 판매금지
- 종축업	영업의 일부 정지 1월	영업의 일부 정지 3월	영업의 일부 정지 6월	• 종축으로 판매 금지
- 소사육업·양돈업· 양계업	경고	영업의 일부 정지 15일	영업의 일부 정지 1월	• 생산된 가축의 판매 금지

- 1)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행정처분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를 기준으로 함
- 2) 부회업의 경우 영업정지 처분의 개시일은 입란중인 종란의 마지막 부화 예정일 이후 4일째 날부터 시작한다.

다. 과태료(축산법 제47조, 시행령 제20조제3항 및 별표3)

□ 부과하는 경우 및 부과액

① 다음 신고를 하지 않은 자

-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그 영업을 휴업·폐업하거나 휴업한 영업을 재개한 때 또는 등록 변경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(축산법 제20조제3항)
- 영업의 양도·양수, 상속, 법인 합병 등으로 인한 영업의 승계를 신고하지 않은 경우(축산법 제20조의3제2항)

▷ 부과액: (1회 위반시) 10만원, (2회) 100만원, (3회이상) 200만원

② 축산업 등록 시설·장비 등을 갖추지 않아 이를 시정토록 한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경우(축산법 제20조의4제2항)

▷ 부과액: (1회 위반시) 100만원, (2회) 200만원, (3회이상) 300만원

③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가 지켜야 할 사항을 지키지 않은 경우(축산법 제20조의5)

▷ 부과액: (1회 위반시) 3만원, (2회) 30만원, (3회이상) 100만원

④ 축산업의 등록을 한 자에 대해 가축의 개량, 가축질병의 예방, 축산물의 위생수준 향상 및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를 위해 필요한 명령이나 검사를 거부·방해 또



는 기피한 경우(축산법 제22조제1항)

▷ 부과액: (1회 위반시) 10만원, (2회) 50만원, (3회이상) 200만원

□ 부과시 유의사항

- ①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 부과기준은 최근 3년간 같은 위반행위를 한 경우에 적용하며
 - 위반횟수별 부과기준의 적용일은 위반사항에 대하여 부과처분한 날과 다시 동일한 위반사항을 적발한 날로 함
- ②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참작하여 과태료 부과금액의 50% 범위안에서 가중 또는 감경할 수 있으며,
 - 가중하는 경우에도 과태료 총액은 500만원을 초과할 수 없음

4. 자금지원

- 등록에 필요한 시설·장비 등을 갖추는데 필요한 자금을 지원함으로써 농가부담을 경감하고 축산업등록제의 조기정착 유도
- 지원대상·내용 및 기간
 - 부화업, 종축업, 계란집하업 및 가축사육업 경영자로서 등록대상이 되는 축산업 경영자
 - 축산업등록시 필요한 시설이나 장비를 갖추는데 소요되는 비용
 - ※ 축산업등록과 관련없는 시설·장비 구입 등은 지원제외
 - 축산업 등록기간중 지원: '04~'05년(2개년)
- 사업비 및 지원기준
 - '04년 사업비 13,000백만원
 - 부화업, 종축업, 계란집하업, 부화용알 생산업 개소당 100백만원
 - 가축사육업 개소당 50백만원 이내
 - 지원조건: 융자 80%, 3년거치 7년상환, 연리 3% ㉟